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권기수 의원외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1년 9월 8일

○ 회부일자 : 2011년 9월 9일

3. 제안이유

-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 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한옥의 정의 및 적용대상 (안 제2조, 제3조)
- 한옥마을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안 5조, 제6조)
- 한옥의 등록 (안 제14조)
-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안 제1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 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 적용대상을 도지사가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으로 제3조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 예산확보 등 재원조달 문제에 관하여 제17조에 보조금 및 용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업무관련부서인 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와 충분한 업무협의를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2011. 7. 7 ~ 7.26)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직접적인 위임근거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사무집행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또는 사전의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에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선택하였음
- 조문의 표현은 중복되지 않고 간결하게 경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알기 쉽게 표현 하였음

####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바
-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 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 정당성 및 법 적합성, 기술적인 사항 등에 이견이 없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